

## 상생채권신탁 제안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플랫폼 전략**)

강승완이사 02- 768-7951 anycall@nhqv.com

박찬진대리 02-2229-6845 cjpac@nhqv.com

I. 현 황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의 문제점

II. 상생채권신탁

- 구조
- 각 주체별 기대효과

III. 업무진행

- 계약절차, 수익지급

IV. (응용)활용사례

- 정산 감정을 통한 하도급법 위반 해소
- 정산 감정을 통한 정산 분쟁 해결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공시 의무 활용
- 노임 대리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해결
- 공동도급채권신탁
- 신탁보수 기금출연을 통한 환급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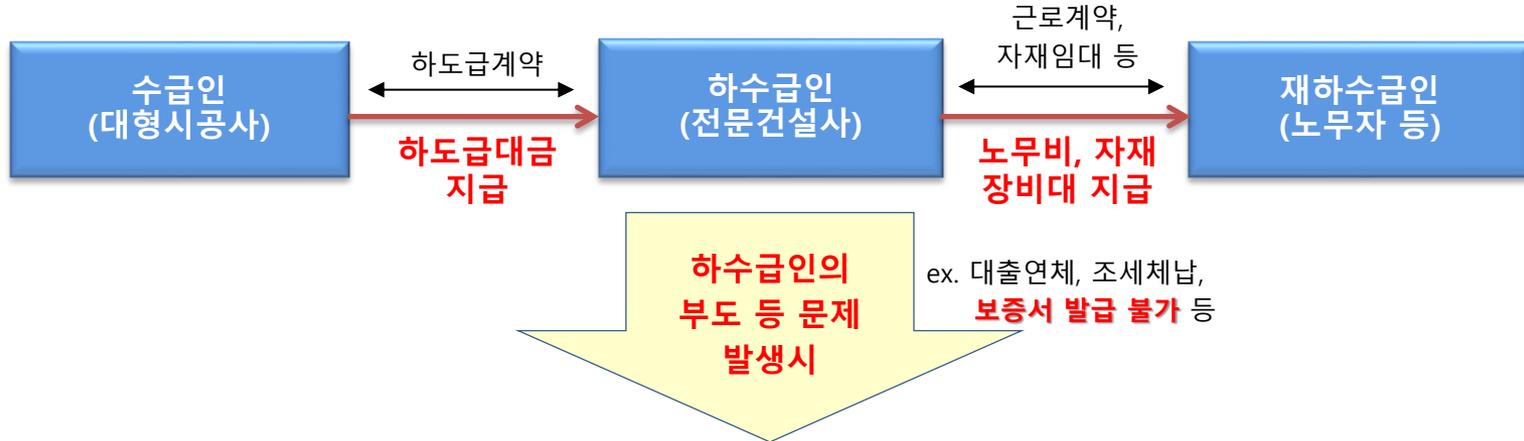
V. 기타

- Q & A
- 신문 보도자료

※ 신탁의 개념

※ 요약

## ■ 현재 하도급대금 지불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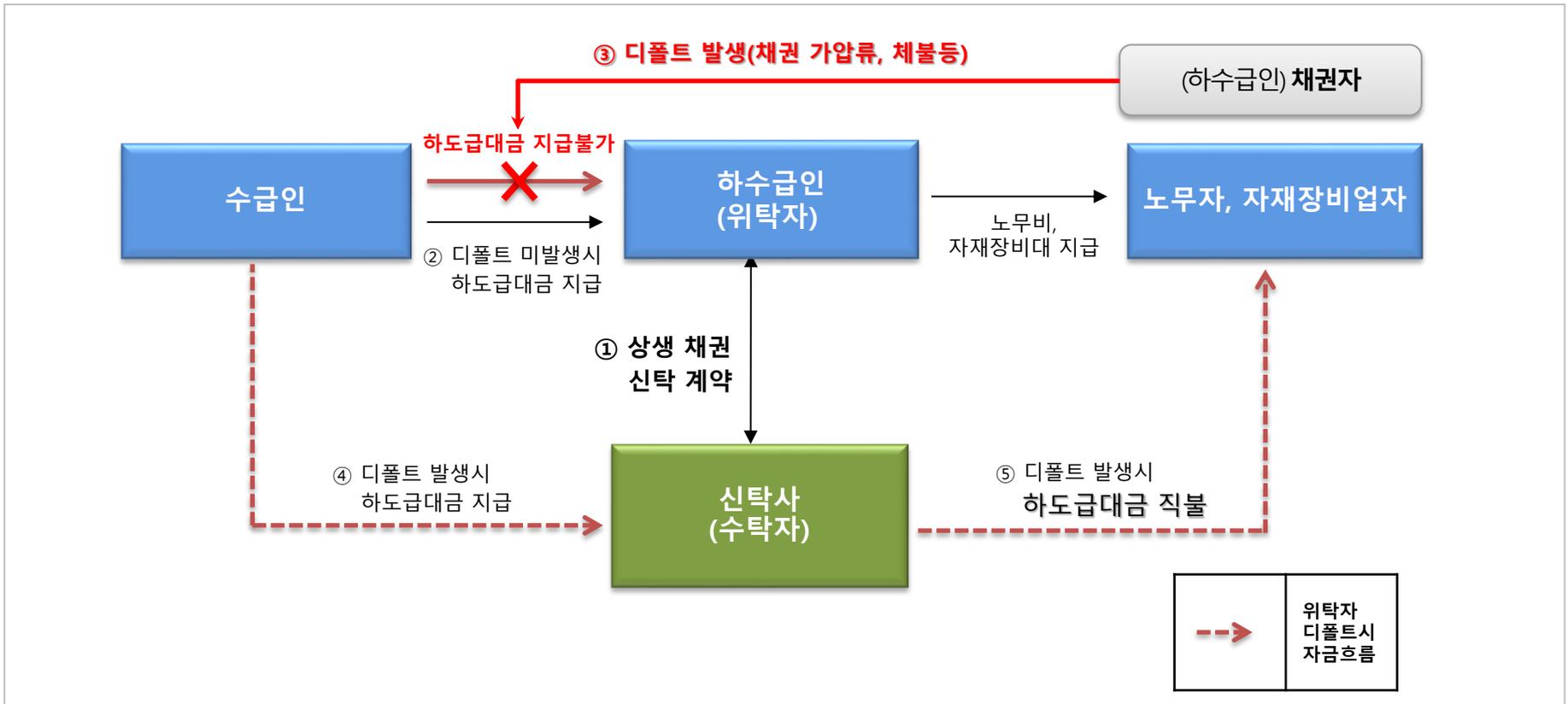


- ① 공사 진행 리스크 증대: 가압류 등 제한물권 통지로 자금집행 불가 / 체불로 인한 파업 등
- ② 수급인 관리업무 폭증: 기업회생절차 관련업무 / 재하수급인의 민원 처리 / 직불집행업무

⇒ 새로운 시각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지불시스템 필요

위탁자(하수급인)는 보유한 금전채권(하도급 공사비채권, 미래채권)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 제1종 수익권을, 수급인에게 제2종 수익권을 교부

- ① 정상지급 : 원 자금흐름과 같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1종 수익) 지급
- ② **디폴트 발생시** : 1종 수익 지급을 중단하고, 2종 수익 지급(협의 시 직불 가능)



### 수급인



- 하수급인 디폴트(가압류, 회생, 파산 등) 시 계약해지 없이 직불을 통해 원활한 준공
- 기성금 가압류 등 분쟁시 법적 검토 시간 및 비용 절감, 기성금 유보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헷지
- 직불을 위한 복잡한 절차 및 서류 등 확보에 소요되는 행정 업무 가중 해소
-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PQ)

### 하수급인



- 현장 무관 가압류 채권자의 하도급대금 가압류 등 방어로 체불 민원 해소
-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 보증서 발급 불가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없이 신탁계약 대체 선택 가능
- 기성금 가압류 등 발생 후에도 개설된 신탁계좌로 정상적 집행을 통해 자금 경색 미발생

### 재하수급인



- 하수급인의 부도 등 사유에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 수취가능
- 기존 직불제도에 비해 절차 및 서류 간편

### 수탁사



- 수급인(대형건설사)의 직불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플랫폼 제공
- 사회적 약자인 재하수급인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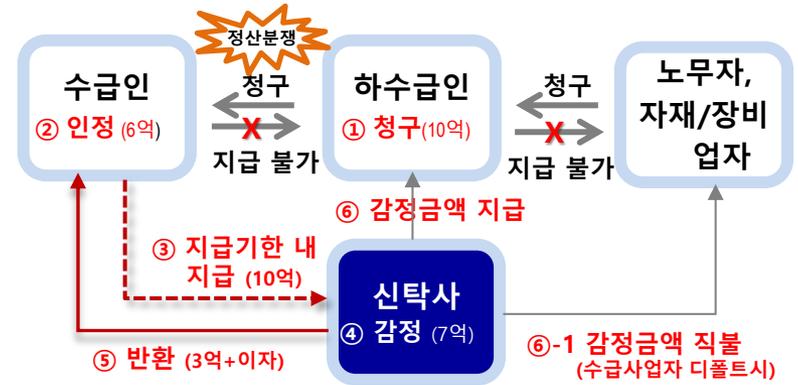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계약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약정서 작업</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수급인, 수탁자 신탁 표준계약서 및 특약 날인</li> <li>2) 하수급인-&gt;수급인으로서의 하도급대금채권 신탁통지</li> <li>3)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권 신탁통지 승낙 날인(확정일자)</li> </o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수익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폴트 사유 발생 전: 수급인-&gt;하수급인 대금 정상 지급(기존방식 유지)</b></li> <li>▪ <b>신탁계약상의 1종 수익 지급 중지사유 발생 시 2종 수익 지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협의)을 위한 수급인의 기성금 지급요청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대상 업체 List, 계좌정보, 요청일 등 기입</li> </ul> </li> <li>- 2종 수익은 신탁재산 입금 후 2영업일 내 지급</li> </ul> </li> </ul>

하수급인과의 정산 이견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체불 등 해결 위해 상생채권신탁 제도 활용

## AS-IS



## TO-BE



개선  
방향  
/  
효과

- ✓ 정산이견·오류 등으로 인한 서면 미발급/지연발급 등
- ✓ 정산합의 도출을 위한 담당자 업무 가중 및 횡령 가능성
- ✓ 하도급대금 정산이견으로 인한 대금미지급·정산합의 체결 곤란

- ✓ 이견금액 기한내 지급/직불 → 지급의무 없는 이견금액 회수
- ✓ 감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정산합의 도출로 원활한 정산업무 수행
- ✓ 정산합의 사실 신탁사 보증 → 객관적 정산합의금 지급 (원가절감)
- ✓ 정산분쟁에 의한 시간(맨아워), 비용 (자문/소송 보수 등) 절감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증가



하도급법 위반 해소 및 체불 해결

법  
위반  
RISK

- 정산합의 지연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지급 및 정산오류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
  -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정산 분쟁으로, 증액/감액 불가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 ■ 현황: 하도급대금 채권(신탁재산)에 대한 정산 이견 및 정산 분쟁 등 발생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및 금융투자협회의 규제를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신탁사가 법원의 감정예규를 준용한 감정절차를 신탁계약서에 반영하여 정산 분쟁 해결
- ⇒ 신속하게 감정금액(신탁재산)을 확정함으로써 신탁사에 의한 정산 합의서 인증 및 수급인의 하도급법 준수, 하수급인의 적시 정산금 수령, 장기간 소송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 달성

\* 감정 소요 기간 : 감정 요청일로부터 1~2주 이내

## 예) 신탁특약 제21조 (신탁재산 정산 감정) - 공동도급 채권 신탁에서 안분금 정산시에도 준용

(1)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신탁재산의 정산 이견이나 정산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신탁 업무의 처리 및 정산금 입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탁사는 제1종 수익자 혹은 제2종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정산 및 신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2) 감정인의 선정은 수탁사의 업무규정(별지5)에 의하되, 감정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부담하기로 하며, 감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발생할 경우 신탁원본에서 최우선순위로 집행하기로 한다.

① 2종 수익자 부담 비율 산식=(감정금액-2종 수익자 인정금액)/(위탁자 요구금액-2종 수익자 인정금액)x100, ② 위탁자 부담 비율 산식=100%-2종 수익자 부담 비율  
(감정금액이 위탁자 요구금액보다 클 경우 : 2종 수익자 부담비율 100%, 감정금액이 2종 수익자 인정금액보다 클 경우 : 위탁자 부담 비율 100%)

\* 위탁자 요구 금액 및 제2종 수익자 인정금액은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금액

(3) 본 신탁특약과 업무규정(별지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판 예규를 따르기로 한다.

**하도급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생채권신탁 정산 감정 프로세스를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및 수급인의 사내 보고 결재 체계(사내표준)에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시 및 ESG경영기법으로 홍보 가능**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건설업)

평가항목 1. 계약의 공정성

> 세부평가항목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배점 3점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

-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절차 마련

⇒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설명·증빙자료

: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분쟁조정절차 마련 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등)

## [하도급법 제13조의3 신설 개정 시행] 공포 2022. 1. 11. / 시행 2023. 1. 11.

**하도급법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중 노임 직불시 '십장'(인력소개소 포함)에게 대리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십장이 위임을 받아 선지급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십장에게 후지급하는 관행이 다수 존재
-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채권신탁을 통한 노임 대리지급 문제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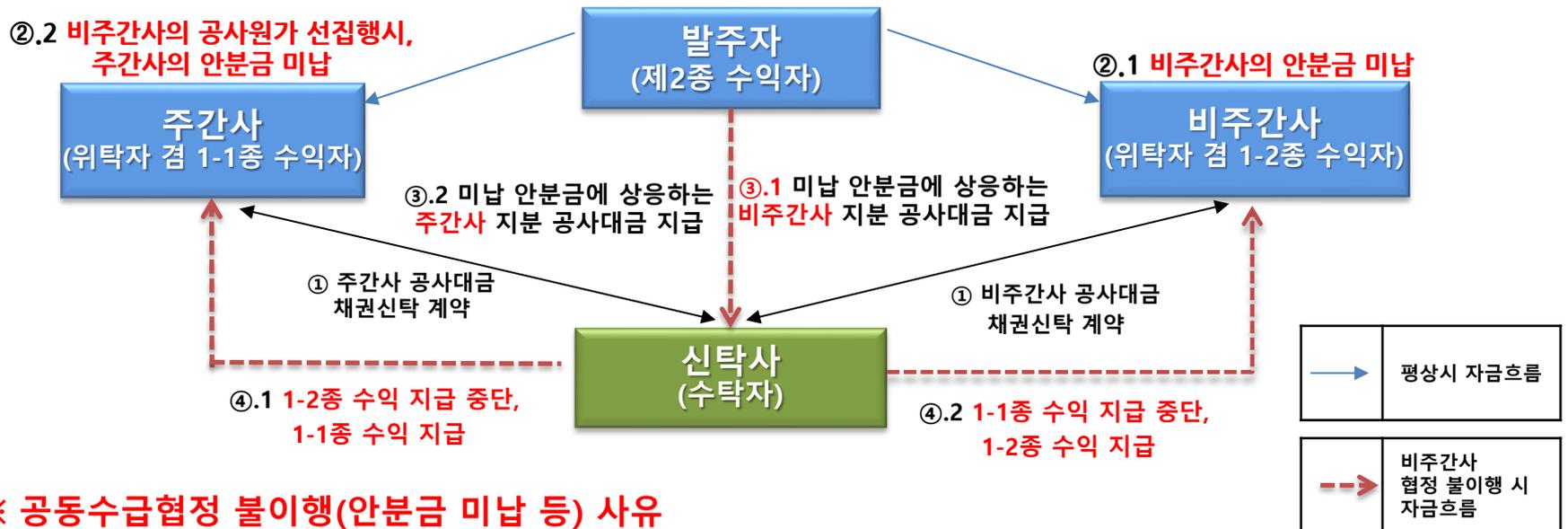
- (1) (3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 사유발생시) 2,3종 수익자인 수급인이 3종 수익권을 십장에게 양도(변경 지정) 하여 3종 수익권자로서 십장이 **임금채권이 아닌 신탁원본의 3종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3종 수익자 변경을 위한 권한과 절차를 사전에 신탁계약서상 명시(위탁자의 동의없이 지정 가능)
- (2) 채권신탁 특약 제1조 제18항 “제3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사유”

(18) “제3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종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변경되는 제3종 수익자)에게 제3종 수익권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탁자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등 포함)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법령이나 행정예규, 정부 정책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2종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변경되는 제3종 수익자)에게 제3종 수익권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제2종 수익자 및 위탁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2종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변경되는 제3종 수익자)에게 제3종 수익권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수탁자가 제2종 수익자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4.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2종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변경되는 제3종 수익자)에게 제3종 수익권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제1종 수익자의 재하도급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를 제3종 수익자로 지정하여 제3종 수익권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2종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등 포함)으로 요청하는 경우

## ■ 공동도급채권신탁이란?

- ⇒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안분금 미납 구성원의 공사대금을 안분금 채권을 가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신탁계약
- ⇒ 신탁계약은 공동 컨소시엄 구성시부터 체결 가능, 협정의 정상 이행 중 자금집행 흐름은 기존과 동일
- ex. 비주간사의 안분금 미납시 신탁사는 미납금에 상응하는 비주간사의 공사대금을 주간사로 지급



## ※ 공동수급협정 불이행(안분금 미납 등) 사유

- 1) 비주간사 → 주간사에게 안분금 미납 발생, 주간사 : 비주간사의 공사원가 선집행 안분금 미납 발생
  - 2) 비주간사 및 주간사의 안분금 미납, 파산, 해산, 부도, 공사대금 (가)압류, 중도 탈퇴 등 발생
- ☞ (신탁)효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안분금 미납시 신탁사를 통해 미납 안분금 변제 가능

## 개 요

- 협약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협약목적
  - 정부 동반성장 추진정책 동참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직접적 금전지원으로 회사이미지 제고
- 동반성장 투자재원
  -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모든 활동 지원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 예. **상생채권신탁보수**,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 지원, 현장노조 증액비, 협력사 직원 직무교육/안전교육 등

## 출연 세제 혜택

- 세제혜택: 출연금의 **95%(지방세포함시 100.4% 환급)** 가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으로 세제혜택 확대

구 분	혜택 내용
①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출연금 x 25%( <b>26.4%</b> 지방세 포함시)
②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 공제')	출연금 x <b>8%</b> (농특세 고려)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따른 절세효과)	출연금 x <b>3 x 22%</b> (지방세 포함)

## PQ심사시 가점

- 동반성장지수 :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 중 '특별지원' 해당  
: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에 해당
- ※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시 가점 부여

**Q. 상생채권신탁을 도입한 건설회사는 있나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도입했나요?**

A. 대형건설사인 D,H사이며, 협력업체의 자금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유지 필요성으로 계약 체결 부동산신탁회사들도 원도급사들의 부실징후로 인해 최근6개월간 급격한 체결신청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신탁보수 지급 주체는 누구이며 신탁보수는 어느정도인가요?**

A. 신탁계약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하수급이나 본건의 경우 수급인과 사전합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신탁보수는 계약체결 규모(건별, 현장별, 회사 일괄 도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협의를 필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계약이행보증은 (가)압류방지, 회생/파산 대응 및 정산 분쟁 해결 기능이 없으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체불금 대위변제금 보증도 불가합니다.

**Q.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 현재 사용중인 자금집행 전산시스템과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A. 보완관계입니다. 평시에는 기존의 자금집행프로세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디폴트시에는 신탁을 거쳐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하게 됩니다. (혹은 신탁이 직접 직불도 가능합니다).

**Q. 건설회사의 상생채권신탁 도입 주관부서는 어디인가요?**

A. 각 사마다 업무처리 부서가 상이하여 특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외주계약실, 법무팀, 기획팀, 개별현장에서 진행 합니다.

**Q.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탁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A. 별도 문의바랍니다

- 건설경제신문 21-02-16 10면

## '채권신탁'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대안으로 부상

직접지급시스템도 압류에 취약...채권신탁 계약으로 공사대금 보호  
법적 분쟁, 대금 체불에 따른 공정지연 리스크 해소

공사의 발목을 잡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계약 체결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중략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건설현장에서는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150명은 두 달간의 임금이 체불되자 원도급사의 현장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을 다 지급했지만, 임금을 직접 지급 해야 할 재하청업체는 하도급사에서 기성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못 준다고 했고, 하도급사 측은 재하청업체에 줄 돈을 다 줬다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자 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속속 추진 중이다. 하도급지킴이와 노무비닷컴과 같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역시 부실 하도급사가 낄 경우 체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나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없어 임금 직불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상생채권신탁은 하수급인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하도급사에서 부실이 발생해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계좌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의 하도급지킴이나 노무비닷컴 등의 직접지급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분쟁에 따른 공정지연의 위험이 있었다"면서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도급사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 원활한 준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대한경제신문 23-04-12 7면

## 하도급대금 지급 갈등, 국책사업 현장 멈췄다

울산 북항탱크 터미널 공사현장 지난달부터 공사중단돼

공사비 정산 이견·하도급사 부실 등 난맥상 줄이어  
건설경기 악화로 갈등·분쟁 지속...하도급사 관리 비상

대금 지급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대형건설사가 맡고 있는 국책사업 현장마저 멈춰서는 등 하도급 대금 및 협력업체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액화천연가스) 패키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하도급사들이 잇따라 공사중단을 선언하면서 공정이 한달 이상 멈춰선 상태다.

공사 중단 배경은 하도급 대금이 장비, 자재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장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KTT플랜트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2차 하도급사에게 흘러가야 하는 자금길이 막힌 것이다.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이 지급되려면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해지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회상절차 중에는 법정관리인만이 계약 이행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체불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조정 등과 관련한 정산 갈등도** 빚어졌다.

하도급사인 부강종합건설은 공사 중 설계변경 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지만, 원도급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하도급사 및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 요약 -

실제 작년 연말에는 화성산업이 시공 중인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인 보현건설이 건설근로자 40여명의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져 현장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화성산업은 하도급사에게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불했음에도 하도급사의 부실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 변제하는 등 이중 부담을 지며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 및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도급 등 각종 대금지급 시스템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정밀한 관리와 더불어 대금지급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 운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건설회사법무직협의회 관계자는 "주택 미분양 등으로 원청사가 하도급사에게 지불 해야 할 대금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2차 하도급사 등으로 내려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지만, 이는 1차 하도급사에 해당될 뿐 협력사 중 어디서든 부실이 발생하거나 1차 **하도급사의 경영악화로 가압류**가 걸릴 경우엔 대금지급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대한경제신문 23-04-27

## 하도급대금 분쟁 차단 '상생채권신탁'이 뜬다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 기존 대금지급 시스템 한계...부실 협력사에 의한 회생·가압류에는 속수무책 DL이앤씨, 작년말부터 '상생채권신탁 시스템' 전 현장에 도입하며 대금지급 분쟁 해결 원·하청 지급관계는 물론 하청-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까지 일괄 관리...정산 분쟁 생겨도 제3자 감정 통해 해결

최근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쿠팡물류2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수백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골조공사 시작 이래 임금체불이 수차례 빚어졌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시행사인 쿠팡이 임금 체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설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현장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하도급사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공사비 증액 요청을 원도급사가 반영해주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항변한다. 결국, 대금지급 분쟁이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 등 건설산업 참여자 모두를 갈등의 늪에 빠뜨린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대금지급 분쟁이 확산하며 공사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화된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며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작년 말부터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대다수 건설사들이 활용하는 공사대금 직불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대다수 건설사들은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의 '에스크로' 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금지급 시스템 역시 부실 하도급사가 낄 경우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사에서 부실이 발생해 회생절차 및 압류 등의 문제가 터질 경우엔 에스크로 계좌의 출납이 중단되며 돈뎌경화 현상에 빠지기 때문이다.

DL이앤씨가 도입한 상생채권신탁 시스템은 하청업체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해 공사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 방식에서는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계좌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이 보호된다. 아울러 이 시스템은 원·하청업체 간 대금지급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인 건설감정인의 중재를 받도록 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하도급 대금이 특정한 단계에서 막힐 여지가 차단되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가압류 등 하도급사의 부실 리스크로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소모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도급 대금이 마비되는 등 현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사라지며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계약내역 외 추가공사비 등에 대해 하도급사와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법정 다툼없이 합의가 가능해 원·하청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건설은 이보다 앞선 2021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전 현장에 적용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화성산업도 가세했다. -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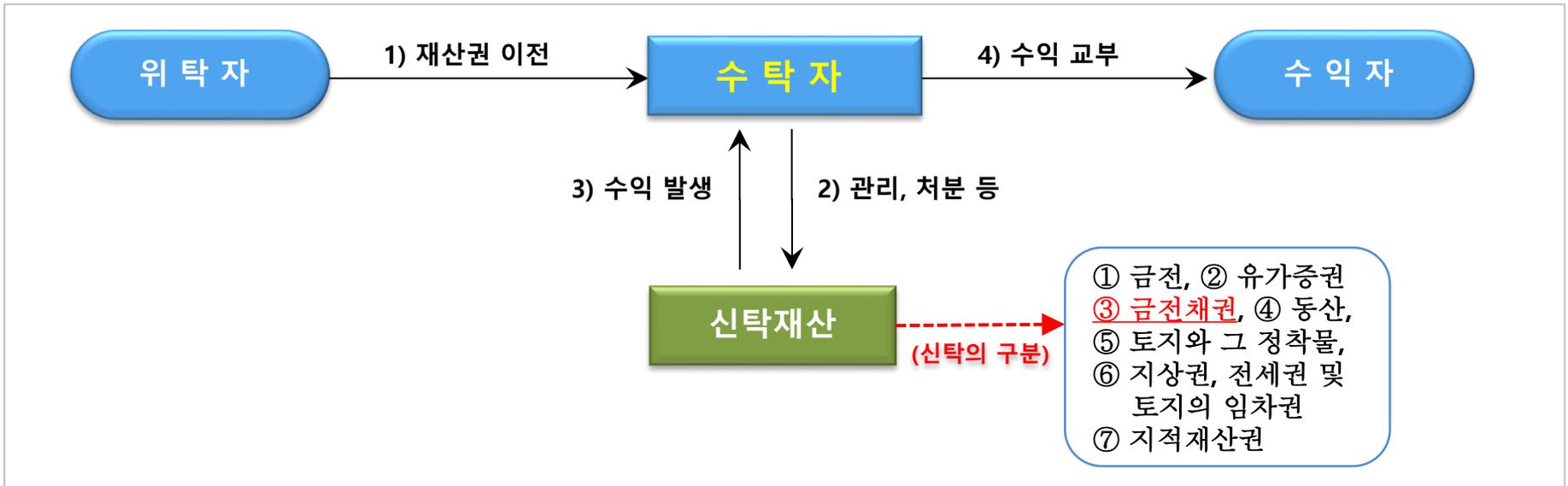
## 신탁(信託)

“신탁이라 함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 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신탁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인의 타 재산과 절연되어 세금, (가)압류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신탁법에 의한 법적안정성  
제고 및 업무절대량 감소



다년간 수 천건의 수행실적 보유  
(대형건설사 및 부동산신탁사)



공사비 정산분쟁 해소  
[약 1개월 내외]



하도급지킴이 등 기존 대금집행  
시스템의 변경없이 간단도입 가능



신탁보수 등 일체비용 無  
하수급인에게 비용전가시 부당특약등  
하도급법 위반



대형신탁회사의 합리적 · 중립적  
의사결정 **only one channel**  
ESG경영 수행

**NH투자증권만이 수행중**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하위 협력업체 / 소속직원 모두에게 유익